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69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장철민 · 조승래 · 김교홍
박정현 · 김영환 · 황정아
박 정 · 고민정 · 맹성규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위원회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나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시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선출 및 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더불어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성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6조(협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